

주기적 지정제등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



회계관리국

- 목차 -

I. 인사말씀 및 설명회 소개	- 3 -
II.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제도	- 4 -
I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16 -
IV.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40 -
V.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 47 -

I. 인사말씀 및 설명회 소개

II.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제도

1 지정제도의 개요 ①

- (지정제도)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크게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으로 구분
 - (주기적지정)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新외감법이 개정되어,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1 지정제도의 개요 ②

- (직권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
- 新외감법 개정으로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구 분	직권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 회사요청, ② 감사인 미선임, ③ 감사인 부당교체, ④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⑤ 감리결과 조치, ⑥ 부채비율 과다(재무기준) , ⑦ 관리종목 , ⑧ 상장예정법인, ⑨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지정요청, ⑩ 횡령·배임 발생 , ⑪ 주채권은행 등의 지정요청, ⑫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외감법령을 위반한 경우(경미한 위반 제외)
폐 지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신 설	① 재무제표 대리작성·회계자문 요구, ② 3년 연속 영업손실 or 負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 (단,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는 제외), ④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⑤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⑥ 3년간 최대주주(2회↑) or 대표이사(3회↑) 변경 , ⑦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 위반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해당하는 지정사유

2 지정시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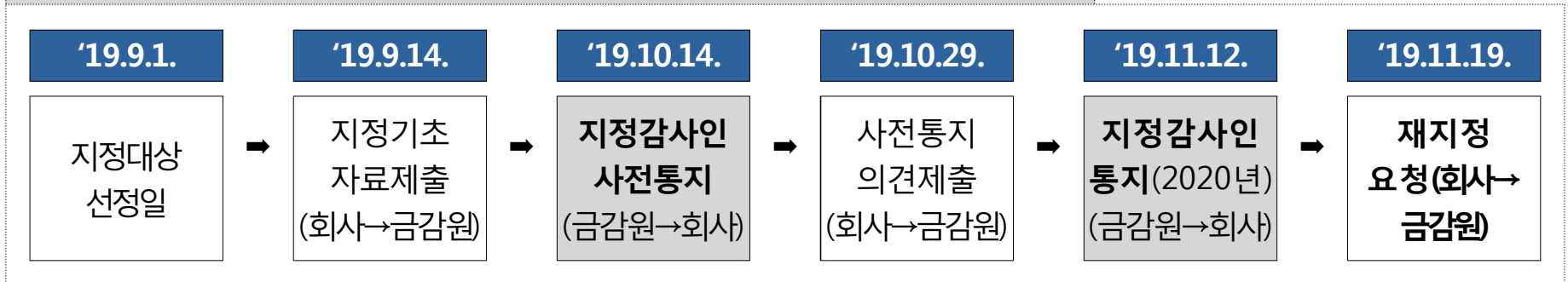
□ (주기적지정)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19.9.1.)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중 지정대상회사를 선정

* 지정대상선정일 : 지정대상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외감규정 §12조⑧)

※ 新외감법에 따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19년에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21년)시까지 지정이 연기되며 '22년부터 주기적지정을 받게 됨

○ 10월 14일(본통지 4주전) 경에 회사와 감사인에게 지정 예정내용을 통지하고,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1월 12일 경에 본 통지(지정통지)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지정 일정



2 지정시기 ②

□ **(직권지정)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차기연도***(사업연도 개시 전)를 지정

* 단, 상장예정법인(9월말까지 요청), 회사요청(감사인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상장폐지요건에 해당)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

○ 직권지정 사유별로 지정대상선정일에 대상회사를 정한 후, 다음달 14일 경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사전통지일로부터 4주 후 본통지

주요 지정사유	지정대상선정일	실제 사례
가. 회사요청, 상장예정	지정요청일	7.5. 요청시: 사전통지 8.14. → 본통지 9.16.
나. 감사인미선임	6월 초일	6.1. 기준: 사전통지 7.12. → 본통지 8.14.
다. 감사인 부당교체, 관리종목(비적정*)	감독원장 인지일	7.10. 인지시: 사전통지 8.14. → 본통지 9.16.
라. 감리조치, 재무기준 관리종목(비적정외) 등	9월 초일	9.1. 기준: 사전통지 10.14. → 본통지 11.12.

* (감사의견 비적정&상장폐지 요건) 거래소가 금감원에 지정대상 통보시 해당 사업연도부터 지정

3 지정기간

- (주기적지정) 주권상장법인 등 주기적지정을 받게 되는 회사는 금감원으로 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됨
- (직권지정) 新외감법 시행으로 지정기간이 1 ~ 3개 사업연도로 늘어남(법 개정 전에는 감리조치를 제외하고는 1개 사업연도)
 - (주기적 지정대상회사*) 3개 사업연도
-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 (주기적 지정대상회사 外) 1개 사업연도(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규위반 사유로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연도에 동일한 법규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받는 경우: 2개 사업연도)

[참고] 주기적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시

- ◆ '20~'22년까지 주기적지정을 받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A가 '22년에 직권지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 상장사 A는 주기적지정대상이므로, '22년에 직권지정 사유해당시 '24년까지 3년간 지정받아야 하므로 주기적지정 기간('20~'22년)과 합하여 '20~'24년까지 5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됨

4 재지정요청

□ (개요) 재지정요청은 통지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이 독립성 훼손사유 등 법령상 정해진 재지정사유에 해당시, 금감원에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감사인 재지정사유

-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감사인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포함) 거짓기재, 지정통지 후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비용분담을 요구하여 징계*받은 경우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 회사가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지정군보다 상위 지정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모두 지정감사이고,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 (요청방법)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감사인은 사전통지 후 2주 이내, 본통지 후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요청가능(전자방식)

* 한공회의 심의·징계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금감원에 기한연장 요청(공문)하고, 징계절차 마무리 후 요청가능

5 지정감사 계약체결 및 보고

□ **(계약체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통지*(본통지)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

* 감사인지정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본통지 이전에도 계약체결 가능

○ 다만 보수협약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에 체결하기 어렵거나 계약 전에 독립성이슈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 운영

*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 (감사보수 관련 신고센터) 지정감사 : 금융감독원, 자유선임 감사 : 한국공인회계사회

□ **(체결보고)** 자유선임과 달리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금감원에 선임 내역을 보고(감사인 선임보고)할 필요는 없는 반면*,

* 지정감사의 경우에도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필요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준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시와 동일하게 금감원에 체결내역을 보고

6 지정방식 ①

□ 감사인(회계법인) 별 지정점수*대로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별도)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5조원} \uparrow \text{ 3배, 4천억~5조원 2배 가중치 부여)}}$

○ 대형·중소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정점수 차감시 가중치 부여('19.10월부터)

<지정방식 예시>

지정대상회사				지정감사인		
회사명	자산규모	지정군	가중치	회계법인명	감사인 지정점수	지정군
A사	10조원	가	3배	I 법인	100,000 점	가
B사	2조원	나	2배	II 법인	95,000 점	가
C사	3천억	라	1배	III 법인	90,000 점	가
D사	2천억	라	1배	IV 법인	80,000 점	나
E사	8백억원	마	1배	V 법인	75,000 점	나
F사	5백억원	마	1배	VI 법인	70,000 점	나

6 지정방식 ②

- (지정군) 회사의 전기말 자산(별도)규모에 따라 5조원 이상은 '가'군(群), 1조원 ~ 5조원은 '나'군, 4천억 ~ 1조원은 '다'군' 등 5개(가~마)의 군으로 구분
 - 감사인은 공인회계사수, 감사업무 매출액 등 분류기준에 따라 5개 군(群)으로 구분하여, 회사가 속한 군(群)보다 감사인의 군(群)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정
- (감사인 등록제)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법 9조의2①에 따라 등록된 감사인에게만 배정('20 사업연도부터)
- (기타) 회사가 전기에 자유선임했던 감사인은 당기 감사인 지정시 배제*
 -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선임시(자유선임) 전기 지정감사인을 배제해야 함(외감법 §11조⑥)
 -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 회사는 지정사유가 동일한 경우, 전기에 지정받은 감사인을 당기에도 우선적으로 배정(3개 사업연도 恨)

7 주기적지정제 세부내용 ①

□ (분산지정) 특정연도에 주기적지정 대상회사가 쏠리게* 될 경우, 지정하는 회사수가 일정**하게 되도록 분산하여 다음연도로 지정을 연기

* 회계법인의 감사인력 확보 및 인력관리의 어려움, 지정해제 후 자유선임시 수주경쟁으로 인한 감사 품질 저하우려

** 시뮬레이션 결과 시행 첫해에는 자산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여사가 지정대상 추정('19.6.12. 보도자료)

○ 다음연도에는 지정이 연기된 회사부터 우선 지정하며, 나머지는 해당연도 지정대상회사 중 자산규모가 큰 순서대로 지정

□ (잔여계약) 주기적지정 시행('19.11월) 전에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과 체결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에는 지정연기*

*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씩 감사인을 자유선임하고 있어, '18년에 자유선임한 경우 '20년까지 '19년에 자유선임한 경우 '21년까지 각각 주기적지정이 연기

7 주기적지정제 세부내용 ②

□ **(감리결과 무혐의)**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는 주기적지정을 면제

*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받지 않은 경우

○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감리를 신청할 수 있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으면 지정면제

□ **(감리진행)**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지정이 연기

○ 감리결과 무혐의인 경우 향후 6년간 지정이 면제되며, 감리결과 지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직권지정을 받게 됨

□ **(기타)** '20년 이전에 직권지정을 받았던 회사는 감사인이 지정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 사업연도(자유선임)가 지나면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

* 예를 들어 '18년에 직권지정을 받은 경우 '25년부터 주기적지정대상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주기적지정 관련

☑ Q1 주기적지정 대상회사(6개 사업연도 자유선임) 판단방법

상장사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데, 6개 사업연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정대상선정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20년 주기적 지정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일반적인 경우 '14년부터 '19년까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입니다.

다만 '20년에 주기적지정 대상회사가 많을 경우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일정 회사만 지정하며, 자산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회사는 차기년도로 지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I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2 직권지정을 받는 상장사의 주기적지정 시기

'20년에 직권지정을 받은 회사는 언제 주기적 지정대상이 되는지?

해당 회사는 다른 요인이 없는 경우 '29년에 주기적 지정대상*이 됩니다.

* 다만,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29년에 주기적 지정대상회사가 많을 경우 지정연기 가능함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 등 주기적 지정대상회사는 '20년에 직권지정사유 발생시, '22년까지 총 3년 동안 지정을 받고, 주기적지정은 직권지정이 종료된 이후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지정받게 되므로, '23년부터 '28년까지 자유선임 후 '29년에 주기적 지정대상이 됩니다.

☑ Q3 분산지정시 차기년도 지정방법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가 많아 일부를 분산하여 차기년도에 지정(분산지정)할 경우, 차기년도의 지정방식은?

차기년도에는 분산지정으로 전년도에 주기적지정이 연기된 회사부터 우선 지정합니다.

분산지정으로 연기되었던 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차기년도 주기적지정 대상회사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순서대로 지정하게 됩니다.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4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자유선임 계약시 중도에 주기적지정 여부

상장사의 경우 3개 사업연도 자유선임을 하는데, **3개 사업연도 도중에 주기적 지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바로 감사인이 지정되는지?** 아니면 3년기간이 종료된 후에 지정되는지?

3사업연도 연속 계약 중이더라도 주기적 지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주기적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 **최초적용 사업연도**(12월말 결산: 2020회계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 기간 중에는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2월말 결산 상장사 적용사례) '18년에 3년 자유선임한 회사: '20년까지, '19년에 3년 자유선임한 회사: '21년까지 주기적 지정이 연기됨

☑ Q5 주기적지정제 시행 전에 체결한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9년에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의 경우, **언제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지?

'19년부터 '21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지정이 연기되며, 다른 면제나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2년부터 주기적지정 대상이 됩니다.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

다만, 6년 동안 자유선임한 회사라 하더라도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22년 이후에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I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6 분산지정으로 주기적지정 연기시 자유선임 계약기간

분산지정으로 **주기적지정이 연기된** 상장사는 자유선임시 감사계약을 몇 년 체결해야 하는 지? 그리고,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3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기간 중에는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주기적 지정 분산시행 등으로 지정이 연기된 상장사는 자유선임시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주기적지정이 연기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자유선임한 3년 중이라 하더라도 주기적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7 주기적지정 면제여부

회계상 이슈가 없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작동하는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계이슈가 없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작동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지정 대상이 됩니다.

주기적지정제는 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과거 감리결과 조치받지 않은 경우나 감리 진행중인 회사, 분산지정에 따라 연기된 경우 등 법령상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기적지정이 면제되거나 연기되지 않습니다.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8 감리결과 경미조치시 주기적지정 면제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 주기적지정 **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중선위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기적지정이 면제되며,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주기적지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외감규정 §23조①)**는 **감리(외감법 §26조)**와 다르며, 주기적지정시 심사결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Q9 감리결과 무혐의 등으로 조치받지 않은 경우 주기적지정 면제기간

주기적 지정대상회사가 **감리결과 무혐의** 등으로 조치받지 않은 경우 **몇 년간 면제**받는지?

감리결과 조치받지 않은 회사는 **감리종결 이후 6년간** 주기적지정이 면제됩니다.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10 지정기초자료의 제출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모든 주기적지정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기초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기초자료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따라 영업이익, 이자비용 등 재무정보와 과거 감사인 선임방법 등을 기재하여 전자문서(외부감사보고시스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Q11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의 분리운영 여부

감사인 지정시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을 각각 분리하여 운영(지정방법, 지정절차)하는지?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은 지정사유는 다르지만 법령상 지정방법과 절차가 동일하며,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과 절차대로 지정합니다.

2 직권지정 관련

☑ Q12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 2회 이상 변경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상장사는 감사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상장사는 지정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① 사망, 상속,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②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기관 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변경된 경우, ③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외감법 시행령 §15조④)들 간에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변경된 경우는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 Q13 최근 3년 이내 대표이사 3회 이상 교체

최근 3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3회** 이상 교체된 상장사는 감사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3회 이상 교체된 상장사는 지정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① 사망,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 ② 대표이사가 둘 이상이고, 이 중 일부만 교체된 경우[기존 대표이사 전원 교체시(순차교체 포함)에 1회 교체로 간주], ③ 기존 대표이사는 교체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는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14 당기 이전에 최대주주 변경이나 대표이사 교체 사유로 지정된 회사

당기 이전에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 사유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 당기에 지정대상 선정시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 관련 지정대상 선정시 당기 이전에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로 지정된 회사는 해당 지정(지정대상선정일) 이후 변경 또는 교체 횟수로 지정대상을 선정(판단)합니다.

☑ Q15 당기 이전에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

당기 이전에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 당기에 어떻게 지정대상 선정하는 지?

당기 이전에 세가지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부의영업현금흐름 발생, 이자보상 배율 1미만)로 지정된 회사는 해당 지정(지정대상선정일) 이후 제출된 재무제표로 지정대상을 선정(판단)합니다.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16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 적용 관련

新외감법 개정으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이나 **부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또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상장사는 감사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나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상장사는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① **금융회사**(외감법 시행령 §8조③2), ② **금융회사가 아닌 상장사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BBB등급*) 이상인** 회사는 **부의 영업현금흐름 관련 지정대상 선정시**(영업손실이나 이자보상배율 1미만 관련 지정대상 선정시에는 미고려)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19.8월 현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추후 변동시 안내) 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기준, 이와 동등한 타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포함)

또한, **기업인수목적회사**(외감법 시행령 §14조①)와 **기술성장기업***은 세가지(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신규 재무기준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 지정대상선정일 현재 거래소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성장기업

I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17 주기적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사유 추가 발생

주기적지정을 받고 있는 법인이 **직권지정사유에도** 해당하게 되면, **지정기간이 연장**되는지?

주기적지정을 받고 있던 회사가 직권지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해 **지정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년~'22년까지 주기적 지정을 받는 회사가 '22년에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여 '22년부터 '24년까지 직권지정대상이 된다면, 해당회사는 '20년부터 '24년까지 총 5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 Q18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위반시 감사인 지정여부

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연제출**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되는지?

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행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게 되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19 직권지정(회사요청) 신청 가능여부

상장사가 자유선임한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상장사는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3개 사업연도** 중이라 하더라도,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기한이란 회사에 따른 법정 선임기한을 의미할 뿐, 실제 계약체결연도(1년차)의 선임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3년 계약기간 중 **2년차, 3년차에 도래하는 선임기한***을 의미합니다.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계속 감사: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 Q20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예, 3년 연속 영업손실) 판단

재무기준 지정사유 중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근 상장한 회사**의 경우 **상장일 이전**의 재무제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근 상장한 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 선정시, 상장일 이전의 재무제표도 포함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I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21 재무기준 지정사유(부채비율 과다) 판단

재무기준 지정대상 판단기준인 **동종업종 부채비율**과의 비교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업종이 다른 경우 동종업종 부채비율과 비교하는 방법은?**

재무기준 지정사유 판단시,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지배회사가 속한 업종의 부채비율과 비교합니다.**

☑ Q22 재무기준 지정사유(부채비율 과다) 판단

재무기준 지정대상 선정시 영업이익,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연결기준**으로 하는지?

재무기준 지정대상 판단시,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정대상을 선정합니다.**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23 회사요청 지정시 통지시기 변경

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감원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감사인 선임기한(외감법 제10조)** 내에 지정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지?

법상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선임기한(외감법 제10조)** 내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며, 지정통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외감법 §10조⑦1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자유선임시와 달리 법 §10조①(선임기한)을 적용받지 않음

3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 Q24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모두 지정감사)

주기적 지정대상인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지정감사인과 일치시키기 위한 재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자유선임이 아니라 지정감사인인 경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Q25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한쪽만 지정감사)

외감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서 지배·종속회사간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는 무엇인지?

해당 회사가 자유선임으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과 계약기간 중인 상황에서 해당 회사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았을 때, 기존 감사인을 해임(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하고 지정받은 감사인으로 선임(자유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 사유로 인한 해임은 지배회사, 종속회사 모두 가능합니다.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26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계약 중도해지(모두 자유선임)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자유선임 감사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자유선임 감사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라도 감사인을 중도해임시킬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 등은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사인의 중도교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은 지정되며, 해당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잔여 계약을 해지하고 지정감사인으로 선임(자유선임)이 가능합니다.

4 기탁사항

☑ Q27 지정감사인 정하는 방법

감사인 지정시 지정대상 회계법인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혹시 여러 곳을 지정하는지?

감사인 지정방식은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개별 재무제표)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합니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는 감사인(회계법인) 한 곳*을 정하여 지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 舊 외감법상 상장예정 법인이거나 회사가 지정요청(감사(위원회) 승인)한 경우 감사인 두곳을 지정하였으나 동 제도는 폐지

☑ Q28 지정감사인 자격제한

감리조치 결과로 20년에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 회사의 경우, '19년 자유선임 감사인은 지정감사인 후보에서 제외되는지?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유선임한 감사인(회계법인)은 당해연도에 지정감사인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경우, 전기 지정감사인을 당기 자유선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29 감사인 지정통지 시기

재무기준 지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언제 감사인 지정통지**를 받게 되는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재무기준 지정사유에 해당여부가 결정되며, 이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부터 6주가 지난 날(11월 중순 경)에 지정통지(본통지)합니다.

한편, 지정통지 4주 전(10월 중순 경)에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지정예정내용을 알리고 재지정요청 등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도 합니다.

☑ Q30 주기적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사유 발생

상장사가 '20년부터 '22년까지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던 중, '22년에 직권지정(재무비율 악화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감사인**으로 지정받게 되는지?

전기에 주기적지정을 받던 회사가 당기에 직권지정 사유에도 해당할 경우, 당기 지정감사인은 전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라 하더라도 전년과 다른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 감사인이 우선 배정되지 않고, 법령상 감사인 지정방식에 따라 감사인(회계법인)의 지정접수 순서대로 회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31 지정감사인과의 보수협의를 어려운 경우

감사인 지정을 통지받은 감사인과 **보수협의를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지정요청**이 가능한 지?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단순히 보수협의를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는 **없으며**,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보수요구와 관련 **한공회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 회사는 재지정요청이 가능합니다.

*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경우로서 한공회 내 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재지정요청이 가능
한편, 일반적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간 보수협의를 난항을 겪어 기한내에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금감원에 기한연장을 공문요청한 경우

I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32 지정감사인과 보수관련 분쟁시 재지정 요청기한 연장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여 다른 회계법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절차(한공회 심의·징계)에 **상당기일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재지정요청을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도한 보수요구와 관련 한공회의 심의·징계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재지정 요청기한(본통지 후 1주 이내) 내에 재지정을 요청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우선 금감원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기한연장을 요청**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33 지정감사시 감사인 선임시간 등 문서화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시간·인력·보수** 등을 **문서화**를 해야 하는지?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시간·인력·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감사(위원회)는 문서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문서화한 사항을 승인받고, 준수되었는 지를 확인한 문서를 제출해야 함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34 지정사유 소멸시 지정해제 여부

재무비율 악화, 횡령·배임혐의로 공소제기 등의 사유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는지?

감사인 지정은 행정처분으로 무효*이거나 철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 지정대상 판단시점(지정대상선정일)에 지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나 실수 등으로 잘못 판단하여 지정된 경우

☑ Q35 금융회사의 감사인 지정방법

금융회사의 지정감사인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금융회사 감사실적** 등 외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를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합니다.

*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감사실적, 금융회사 감사시 투입가능한 인원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

** (외감규정 시행세칙 §15②) 감사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산정기준일(8월 31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기초자료를 금감원에 제출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36 사전에 제출된 독립성 관련 자료의 활용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면서, **독립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할 경우 지정업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법령상*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토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정기초자료와 같이 독립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전통지 이후 이를 검토하여 본통지(지정통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외감법 §11조④)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독립성훼손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증선위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가능

한편, 주기적지정 대상회사가 지정기초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지만, 독립성 관련 자료*는 반드시 지정기초자료와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①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와 ② 본통지 후 1주 이내에 제출가능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37 지정사유 소멸시 지정해제 여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 전에 상장사와 3년 감사계약(자유선임)을 체결한 회계법인이 '19년말까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기존 자유선임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19년말까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상장사의 '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는 수행할 수 있지만, '20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년 초에 기존 감사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2개월 이내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Q38 독립성 이슈 해소 관련 지정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여부

지정통지를 받은 회사와 회계법인 간에 독립성 이슈가 있어 감사계약 체결전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 체결기한(지정통지 후 2주 이내)을 준수해야 하는지?

지정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 간에 재무적 이해관계 등 독립성 이슈가 있어 계약체결 전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정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금감원에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Ⅲ.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39 상위 지정군 재지정 요청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외감규정 별표4 제2호의 표)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는지?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재지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통지시 '라'군에 속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자산규모 상 '라'군에 해당)는 ① '가'군, ② '가'군 또는 '나'군('나'군 이상), ③ '가'군, 또는 '나'군 또는 '다'군('다'군 이상)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정하여 기한 내에 재지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IV. 지정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

1 대상 및 시기

- (대상) 주권상장법인,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 (시기) 사업연도 시작후 9개월째 초일부터 2주이내(12월결산: 9월1일 ~ 9월14일)

※ 아래 내용들은 12월결산기업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외 결산기업은 결산월에 따라 일정이 조정됨

2 주권상장법인

- (법인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농협은행
- (사업연도) 당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주소 및 연락처

IV. 지정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

- (업종 및 업종코드)** '19.9.1.기준 거래소 업종코드(6자리)와 업종명
 - (연결 여부)** 직전 3개 사업연도(Yes/No)
 - (3년간 연결지표)** 자산, 부채, 자기자본,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이자비용
 - 각 사업연도 감사받은 재무제표 수치 기준
 - 오류수정이 당기 비교재무제표에만 반영된 경우 비교표시상 수치 기준
- ※ 모든 금액은 '원' 단위로 기재
- (이자비용)** 금융비용(원가) 중 이자비용(주석항목), 영업외비용상 이자비용
 -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 이자로 구분된 경우 합산
 - (영업비용상 이자비용)** (포괄)손익계산서 영업비용의 이자비용(예, 금융회사)
 - (별도지표)** 자산총액('19.9.1.기준 직전사업연도 : 2018 사업연도말)
 - (과거 3년간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16.9.1.~'19.8.31. 기간중 변경공시일, 변경전·후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사유

IV. 지정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

- (관리종목)** '19.9.1.기준 관리종목 지정여부(Y/N)
 - 세부 사유 기재(재무기준, 시가총액 등)
- (투자주의 환기종목)** '19.9.1.기준 관리종목 지정여부(Y/N)
 - 세부 사유 기재(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 (횡령·배임)** 공시일, 임직원, 혐의 금액, 자기자본
 - '18.4월이후 공시 발생
-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 자유선임, 지정, 비외감
- (연속감사 당기 차수)** 2019 사업연도의 연속감사 차수(1년/2년/3년)
- (과거 6년내 감리 여부)** 감리중, 종결, 해당사항 없음
 - 무혐의 종결(조치)일, 감리기관
- (외부감사법 위반)**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관련 조치(감사전재무제표 등)

3 |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 (지배주주 지분율) 회사 발행주식 총수, 지배주주명, 지배주주 소유주식 수, 특수관계인수(당해 회사 주식소유자)
 - 대표이사와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 자유선임, 지정, 비외감
- (연속감사 당기 차수) 2019 사업연도의 연속감사 차수(1년/2년/3년)
- (과거 6년내 감리 여부) 감리중, 종결, 해당사항 없음
 - 무혐의 종결(조치)일, 감리기관
- (외부감사법 위반)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관련 조치(감사전재무제표 등)
- (별도지표) 자산총액('19.9.1.기준 직전사업연도 : 2018 사업연도말)

4 회계법인

- (사업연도) 현재 사업연도(2019.4.1.~2020.3.31.)
- (주소 및 전화번호) 해당 업무 담당자
- (주권상장법인 등록 여부) Yes/No
 - '19.8.31.기준 등록 또는 신청한 경우 "Yes"로 기재
- (공인회계사 수) '19.8.31.기준 경력회계사(15년이상, 10년, 6년, 2년, 2년미만), 수습회계사 수
 - ※ 명단 파일 첨부
- (매출액) '19.8.31.기준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 회계감사업무 매출액(임의감사 포함)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19.8.31.기준 등록요건상 담당자 수(별표1 제1호마목),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담당이사 제외),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여부

IV. 지정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

- (손해배상능력)** 직전사업연도말 손해배상공동기금, 손해배상준비금, 연간 보험료(합산, 환산)
- (감사대상 상장사 수)** '19.8.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내에 결산일 도래하는 상장회사 수(임의감사 제외)
 - 2018 사업연도 감사 회사는 포함하고, 2019 사업연도 감사 회사는 제외
- (지정제외 점수)**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
 - '19.8.31.기준 1년이내, 1~2년이내, 2~3년 이내로 구분
- (감사업무 제한 회사) Yes/No**
 - ※ 명단 파일 첨부
- (금융회사* 감사 자료) Yes/No**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당회사 및 농협은행
 - ※ 명단 파일 첨부

V.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1 | 감사인 선임기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초도감사는 4개월 이내)
 - 단, 감사위원회 의무설치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2 |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자산 1천억원 이상) 및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3 | 감사인 자격 제한

- '20년('19.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수행 가능
 -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회계법인(미등록 포함)만 감사가능

4 | 감사인 선임권자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선임

구 분	감사인 선임권자
① 감사위원회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

5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요내용 ①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반드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감사 1명,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인,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채권액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 임원

5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요내용②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인 선정을 위해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
 - 원격 영상회의(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상이 송수신되지 않는 음성회의는 대면회의에 포함되지 않음
 -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결과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작성 및 관리
 - ① 감사인 선정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 ②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 ⇒ 감사인 선임보고*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을 제출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내로 금융감독원에 선임보고(온라인 접수)

5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요내용 ③

□ 위원구성 관련 주요 예외사항

①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전문성이 갖춘 사람으로 구성가능

② 주주, 채권금융회사, 기관투자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인이 불출석 사유 및 대리인 증명서류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권 행사(단, 전문가위원은 대리행사 불가)

6 |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문서화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는 상기 사항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문서화된 준수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는 준수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매년 제출

7 | 감사인선임위원회 관련 유의사항

□ **(구성원 수)** 제적위원 7인이상, 2/3(5명)이상 참석, 과반이상(4명) 의결

⇒ 감선위 의사록에 제적위원 표기와 참석자 날인

□ **(구성원 자격)** 사내이사 불가, 각 이해관계자 한도 준수*

*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1명, 주주 2명, 채권자 2명, 외부전문가

⇒ 감사2명, 사외이사 3명 등 불가

□ **(위원장 인선)** 사외이사 중 호선, 감사외의 위원 중 호선

⇒ 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

□ **(약식위원회)** 제적위원 전원의 동의, 3인 모두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

⇒ 감선위 의사록에 제적위원 동의 포함, 외부전문가 2인 포함 불가

감사합니다.